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996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15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,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‘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’의 명칭을 ‘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’으로 변경하며,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

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,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

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966호)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9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 중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시·도자연유산”을 “시·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자연유산자료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”를 “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”로 한다.

제33조의4를 삭제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발주자”를 “발주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,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”으로 한다.
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”를 “국가유산수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을 포함한다)와 국가유산감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등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2의 제목 “(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)”을 “(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설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통건축 수리기술”을 “국가유산수리기술”로, 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”을 “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 중 “전통건축”을 각각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의2.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

제56조제1항 중 “한국전통문화대학교”를 “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, 제4조의3,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
당시 종전의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제41조
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“국가유산감리원”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<u>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</u> 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.	12. ----- ----- ----- -- <u>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</u> -- ----- ----- -----.
13. ~ 17. (생 략)	13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3(시·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·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시·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3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) ① 국가유산수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국가유산수

제4조의3(시·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) ① -----

--- 특별시·통합특별시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시·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4호의2
에 따른 자연유산자료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) ① -----
----- 국가유산수리진흥
재단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) ① -----

----- 「자연
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-

가유산인 경우에는 “시·도지사”를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,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)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.

1.·2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3조의4(허가 등의 의제)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「문

-----.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38조(감리의 시행 등) ① (생략)

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킨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국가유산감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킨흥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

제38조(감리의 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발주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-----

----- 국가유산수리진

흥재단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국가유산수리진흥재

단-----

⑤ ~ ⑦ (생략)

제41조(감리의 제한)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

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

제41조의2(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) ① 전통건축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1. 전통건축의 부재(部材: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·석재 등)와 재료 등의 수집·보존 및 조사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감리의 제한) 국가유산수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을 포함한다)와 국가유산감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을 포함한다)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4장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등

제41조의2(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설립 등) ① 국가유산수리기술-----

-----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-----.

1. 국가유산-----

· 연구 · 전시 2. ~ 5. (생 략) 6. 북한의 <u>전통건축</u>에 대한 조 사 · 연구 및 보존 지원 7. · 8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제51조(수수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4의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<u>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</u> 5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 제56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<u>한국전통문화대 학교</u>의 장 또는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 <u>국가유산</u>----- ----- 7. ·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51조(수수료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<u>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을 인정받으려는 사람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56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 <u>소속기관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